

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1. 보건소

(단위: 명)

직종별	구분 특별시의 구	광역시의 구,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				군	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
		인구 30만명 미만인 시	도농복합 형태의 시	인구 30만명 미만인 시	인구 30만명 미만인 시		
의사	3	3	2	2	1	6	
치과의사	1	1	1	1	1	1	
한의사	1	1	1	1	1	1	
조산사	(1)	(1)	(1)	(1)	(1)	(1)	
간호사	18	14	10	14	10	23	
약사	3	2	1	1	1	2	
임상병리사	4	4	3	4	2	4	
방사선사	2	2	2	2	2	3	
물리치료사	1	1	1	1	1	2	
작업치료사	1	1	1	1	1	2	
치과위생사	1	1	1	1	1	1	
영양사	1	1	1	1	1	2	
간호조무사	(2)	(2)	(2)	(2)	(2)	(6)	
보건의료정보관리사	-	-	-	-	-	1	
위생사	(3)	(3)	(2)	(2)	(2)	(2)	
보건교육사	1	1	1	1	1	1	
정신건강전문요원	1	1	1	1	1	1	
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	(1)	(1)	(1)	(1)	(1)	(1)	
응급구조사	-	-	-	-	(1)	1	

※ 비 고

1.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2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.
3.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.
4.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5. 정보처리기사·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()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·군·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6.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(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2. 보건지소

(단위: 명)

구분	의사	치과의사	한의사	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	치과위생사
보건지소	1	1	1	3	1
통합 보건지소	1 × 관할 읍·면수	1 × 관할 읍·면수	1 × 관할 읍·면수	3 × 관할 읍·면수	1 × 관할 읍·면수

※ 비 고

1.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의로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.
2.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3. 건강생활지원센터

(단위: 명)

구분	의사 또는 한의사	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	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	영양사
건강생활지원센터	1	3	1	1

※ 비 고

1.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.
2.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,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.